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19, 오세희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 11. 20.)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 11. 20.)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이언주의원, 오세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